論 壇

# 金融所得綜合課稅가 生命保險産業에 미치는 影響

權 泳 俊
(翰林大學校 財務學科 敎授·經營學博士)

◀ 目 次 ▶

Ⅰ. 머리말
Ⅱ. 金融所得綜合課稅
1. '94稅制改革案
2. 5년이상 貯蓄性保險의 非課稅 根據
Ⅲ. 金融所得綜合課稅의 影響
1. 金融貯蓄 全般에의 影響
2. 金融機關別 影響
3. 生保産業에의 影響
Ⅳ. 맺음말

## Ⅰ. 머리말

지난 12월 2일 확정된 稅制改革案 內容에 의하면 '96년부터 모든 金融所得에 綜合課稅가 실시될 예정이며, 동 방침에 따라 旣存의 稅制上 優待 또는 非課稅惠澤을 받고 있던 20개 금융상품중 稅制適格要件을 갖춘 個人年金貯蓄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저축(10년 이상), 5년이상유지 貯蓄性生命保險契約 등을 제외한 모든 貯蓄商品에 대해 예외없이 과세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同 稅制改革은 稅制當局의 표현대로 "넓게, 얇게, 고르게"라는 원칙하에 課稅基盤을 확충하되, 稅率은 전반적으로 인하하면서 衡平性을 제고하려 한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租稅政策의 方向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國民皆稅論的 租稅原則의 觀點에서 妥當性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企業稅制의 改善 등 부분적이나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同 改革案은 이제까지 金融貯蓄資産의 形成에 적지 않게 기여해 왔던 金融所得 分離課稅 및 稅制優待 또는 非課稅 惠澤을 廢止 및 대폭 縮小함으로써 향후의 金融貯蓄需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최근 한국통신, 중소기업은행 주식공모 입찰과정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實名制 以後 제도권을 이탈한 막대한 규모의 浮動資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金融所得綜合課稅 方針이 貯蓄市場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金融所得綜合課稅 方針이 金融貯蓄

市場, 특히 生命保險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效果的 對應方向을 논하고자 한다.

## II. 金融所得綜合課稅

### 1. '94 稅制改革案

정부의 '94년 세제개혁안 주요 골자는 所得稅, 法人稅, 財産稅, 消費稅 및 其他 稅政關聯部門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94년 稅制改革案 主要 骨子

| 구 분 | 세 제 개 편 내 용 | 시 행 시 기 |
|---|---|---|
| 소 득 세 | ○종합과세 실시 및 세금우대저축 폐지<br>○소득세율체계 조정 : 5−45% (6단계) → 10−40% (4단계)<br>○인적공제 확대 : 1인당 100만원으로 단일화 | '96. 1.1 |
| 법 인 세 | ○일반법인 법인세율 인하 : 32% → 30% (1억원 초과기업)<br>○공공법인 과표 인하 (3억원 → 1억원)<br>○감가상각제 개편 (특별상각 폐지, 내용년수 신축 운용)<br>○토초세 보완 | '95. 1.1 |
| 재 산 세 | ○양도세율체계 조정 : 40−60%(5단계) → 30−50% (3단계)<br>○양도세 공제제도 축소 (소득공제 폐지)<br>○상속/증여세 세율 조정<br>○배우자 상속공제액 및 퇴직수당 상속공제 인상 | '96. 1.1<br><br><br>'95. 1.1 |
| 소 비 세 | ○부가세 특례 과세기준금액 인상 : 600만원 → 1,200만원<br>○특소세 개편 : 10−60% (6단계) → 10−25% (3단계) | '95. 1.1 |
| 기 타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소득 원천징수자료 제출의무 강화<br>○조세시효제도 개편 : 조세포탈, 상속증여를 10년으로 통일 | '95. 1.1 |

〈표 1〉의 내용중 金融市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부분은 金融所得綜合課稅 實施 및 稅金優待貯蓄에 대한 내용일 것인 바, 따라서 이들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의 金融所得 綜合課稅案을 보면, 다음의 몇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우선, 綜合課稅 基準金額을 보면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 8월 實名制實施의 보완책으로 金融所得綜合課稅 方案이 발표되었던 당시의 예상 수준보다는 상향조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제도의 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급적 줄이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源泉徵收稅率은 현행 20%보다 오히려 인하하고 있는 바, 이는 대부분 旣存의 稅制優待 金融貯蓄商品 縮小를 보완하며, 이를 통해 綜合課稅 對象이 아닌 일반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金融所得綜合課稅 內容

| 구 분 | 내 용 |
|---|---|
| 종합과세 기준금액 |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 이상 |
| 원천징수세율 | – 일반(개인) : 15% → 10% ('97)<br>– 세금우대저축 : 10%로 단일화<br>– 개인연금,장기주택저축, 5년이상 유지 저축성보험 비과세<br>–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이자는 '96년까지 비과세, '97년 5%과세, 2000년 10% 과세 |
| 종합과세 대상범위 | – 모든 금융소득<br>3년 이상 장기보험차익 및 공제소득 (종업원공제, 사업자공제) 과세전환<br>– 주식양도차익 등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98년 이후 검토 |
| 채 권 이 자 | – 실물보유 : 최고세율(40%) 분리과세<br>– 계좌거래 : 원천징수후 종합과세<br>– 장기채권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가능<br>– 국공채이자에 대한 세액감면 폐지 |
| 가 산 세 | – 무신고/과소신고 : 20%<br>– 무납부 : 10% |

또 한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有價證券 讓渡差益에 대한 課稅時期 延期 및 債券利子에 대한 課稅方式 選擇權 附與 등 資本市場에 대한 배려인데, 현재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시장의 沈滯狀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 외에도 課稅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해 일종의 避難處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제도권 안에 잔류시키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다. 이밖에 無申告/過小申告에 따른 加算稅率 上向調整(10%→20%)은 金融所得綜合課稅에 대한 정부의지의 간접표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2월 2일 확정된 金融所得綜合課稅案은 지난 8월의 당초안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5년 이상 維持契約에 대한 保險差益 非課稅惠澤 維持 및 농수축협,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預託金에 대한 課稅時期의 延期이다. 이들 金融貯蓄商品에 대한 세제혜택 유지는 이들이 庶民貯蓄으로서의 역할을 안고 있음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固有特性이 감안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2. 5年以上 貯蓄性保險의 非課稅 根據

#### 가. 保險과 他金融貯蓄間의 相異性

金融所得綜合課稅를 生保商品에 적용하는 것은 保險差益을 銀行 등 他貯蓄商品의 利子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데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生保商品은 貯蓄性商品의 경우라 할지라도 他金融貯蓄과는 근본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保險差益은 滿期保險金이 保險料 納入總額을 초과한 부분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滿期保險金의 상당부분은 장래의 死亡 또는 事故에 의한 保險金 支給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平準保險料를 거둬들임으로써 누적된 결과이며, 時間經過에 의한 價値發生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겠다. 즉, 一般貯蓄의 差益, 즉 利子가 순수하게 돈의 時間價値 槪念에 기초하며, 가입자 또한 이의 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을 이용한다는 점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保險은 개인의 돈을 保險社가 대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계산관행 이외에는 개인지분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他金融貯蓄은 개인을 대신해서 貯蓄機關이 Fund형태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個人持分이 인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保險加入者에게 保險金 支給事由가 발생할 경우 契約者는 契約保險金만을 청구가능하며, 자신의 貯蓄金額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표 3〉 保險과 他金融貯蓄間의 差異點

| 구 분 | 예 금 | 보 험 | 비 고 |
|---|---|---|---|
| Pooling 성격 | Financial Pool | Risk Pool | - 보험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약시에만 인출가능<br>-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자는 보험금만을 청구 가능 |
| Reserve | 개인원금+이자 | 평준보험료 방식의 결과 | |
| Reserve에 대한 개인지분 | 인 정 | 계산관행이외엔 원칙 불인정 | |

계약자들의 保險加入 目的이 교육자금, 노후생활자금 마련 등 貯蓄이라 할 지라도 주로 保障的 性格을 강하게 띄고 있다는 점도 保險商品과 一般貯蓄商品을 구분짓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生保加入者의 加入目的

(복수응답, %)

| 구 분 | '82년 | '88년 | '92년 |
|---|---|---|---|
| 만일의 경우 가족보장 | 42.5 | 53.3 | 46.9 |
| 재해/교통사고 | 19.9 | 23.7 | 23.4 |
| 노후생활자금 | 27.7 | 37.5 | 32.2 |
| 자녀교육/결혼 자금 | 39.6 | 37.0 | 39.3 |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전국조사'

**나. 金融所得間 課稅의 衡平性과 中立性**

他金融貯蓄은 利子를 목적으로 한 金融所得이고, 證券은 餘裕資金運用에 의한 收益이 목적이며, 生命保險은 遺族生活保障과 老後生活資金 마련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세계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利子, 證券의 경우 金融所得課稅를 하면서도 보험에 대해서는 非課稅를 하거나, 課稅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 이유는 첫째, 生命保險이 종합적인 社會保障準備制度로서 '삶의 필요경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生活保障, 老後保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生保加入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生命保險으로 동원된 자금은 長期資金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貯蓄率 提高는 물론, 物價安定과 産業資金支援에 最適의 財源이라는 판단에서 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主要 保險先進國들의 事例

| 나라명 | 이자배당소득 | 증권양도차익 | 보험차익 |
|---|---|---|---|
| 영 국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비과세(일정기간경과 : 10년) |
| 독 일 | 〃 | 과세(6개월이내) | 〃 (일정기간경과 : 10년) |
| 스 웨 덴 | 〃 | 종합과세 | 〃 |
| 네 델 란 드 | 〃 | 〃 | 〃 (일정기간경과 : 12년) |
| 이 태 리 | 〃 | 〃 | 〃 (일정기간경과 : 10년) |
| 덴 마 크 | 〃 | 〃 | 〃 |
| 그 리 스 | 〃 | 〃 | 〃 |
| 아 일 랜 드 | 〃 | 〃 | 〃 |
| 프 랑 스 | 분리/종합 선택 | 분리과세 | 〃 (일정기간경과 : 8년) |
| 벨 기 에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 (보험료소득공제없을시) |
| 대 만 | 〃 | 종합과세 (상장주식비과세) | 〃 |

특히, 保有餘裕資金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證券投資者에 대해서는 金融所得綜合課稅를 '98년 이후로 유예하면서, 이들보다 20배나 많은 2,2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生活保障 目的의 保險에 綜合課稅를 적용하는 것은 金融所得間 租稅의 中立性과 衡平性 缺如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세제개혁안에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證券投資者와 生命保險加入者의 投資規模

('93년말 기준)

| 구 분 | 증권투자자 | 생보가입자 |
|---|---|---|
| 투 자 규 모 | 46.5 조원 | 48.7 조원 |
| 투 자 자 수 | 122 만명 | 2,240 만명 |
| 1인당투자액 | 38 백만원 | 2 백만원 |

註) 증권투자자는 개인투자자 기준

## III. 金融所得綜合課稅의 影響

### 1. 金融貯蓄 全般에의 影響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포함한 '94년 稅制改革案이 실행될 경우 金融貯蓄市場에 미칠 영향은 우선 所得率의 調整에 따른 영향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동 개혁안에 따르면 個人所得稅의 最高稅率은 5%p 인하되고 最低稅率은 5%p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所得稅 自體의 累進度가 약화될 것이다. 비록 '96년부터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실시되면 高所得者의 所得稅 累進度가 증대되기는 하겠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金融所得만이 綜合課稅 對象이 되므로 그 크기는 미약할 것이다. 이러한 稅率의 累進度 弱化는 特別消費稅 및 相續/贈

與稅의 경우에도 관찰되고 있다.

특히, 特別所費稅率의 累進度 弱化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와 함께 高所得層의 消費增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들 계층의 소비증가는 下位 所得階層의 模倣消費를 야기함으로써 전 소득층에 걸쳐 소비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소비의 증가는 저축의 상대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더우기 '94년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표면적으로 6%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消費者들의 체감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플레이션 심리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行政力에 의한 物價抑制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우며, 地自制 選擧, 景氣活況에 의한 超過需要 등 내년에도 물가상승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물가불안심리의 확산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보겠다. 실제로 정부는 '95년 經濟運用의 가장 큰 목표를 物價安定에 두고 消費者物價上昇率을 5%로 잡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동 목표의 달성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物價不安 心理는 최근 장기하락국면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不動產 등 實物資產으로의 자금유출을 야기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金融所得綜合課稅 方針은 또 하나의 자금유출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통신 및 중소기업 주식공모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규모 부동자금이 선동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流出規模는 예상외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財務部에 따르면 夫婦合算 金融所得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 합계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平均利子率을 연 10%로 가정할 때, 약 100조원 정도의 해당 金融資產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1인당 평균 10억원의 金融資產을 소유하고 있으며, 년간 1억원의 金融所得을 거두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연리 10%의 가정하에서 1인당 10억원의 금융자산중 6억원에서 발생하는 金融所得은 綜合課稅의 대상이 되므로, 이론적으로 약 60조원(6억원×10만명)의 金融資產이 세금의 증가를 회피할 목적하에 不動產, 株式 등 代替手段으로 이동할 유인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금이 모두 이동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자금이동 규모를 7~31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金融貯蓄市場에 적지않은 波及效果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고 보겠다.

결론적으로 金融所得綜合課稅 方針은 金融貯蓄市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貯蓄이 利子率에 대하여 비탄력적, 즉 家計의 純貯蓄率이 稅後 實質利子率의 變動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사실과 정부가 物價 및 不動產 價格安定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의 축소를 어느정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 2. 金融機關別 影響

金融所得綜合課稅 對象이 되는 金融資產들의 금융기관별 분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만큼 이들이 각 금융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個人金融資產의 構成變化 推移分析 및 金融所得綜合課稅 方案內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가. 個人金融資産 變化推移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침은 '93년 8월 실명제 실시 당시 이미 발표된 바 있으며, 巨額의 金融所得者들은 이미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金融資産을 조정하여 綜合課稅에 어느 정도 대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金融實名制가 실시된 '93년 3/4분기부터 '94년 2/4분기까지의 個人金融資産構成의 變化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金融貯蓄市場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이나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個人金融資産 變化推移

(단위 : 십억원,%)

| 區 分 | '93年 3/4分期(A) | | '94年 2/4分期(B) | | B-A의 構成比 |
|---|---|---|---|---|---|
| | 金 額 | 構成比 | 金 額 | 構成比 | |
| 通貨 및 通貨性預金 | 15,584 | 5.2 | 13,147 | 3.9 | −5.9 |
| 其他預金 | 156,345 | 52.4 | 185,421 | 54.6 | 70.8 |
| • 저축성예금 | 53,794 | 18.0 | 60,416 | 17.8 | 16.1 |
| • CD | 3,793 | 1.3 | 5,389 | 1.6 | 3.9 |
| • RP | 2,896 | 1.0 | 2,611 | 0.8 | −0.7 |
| • 신탁 | 28,024 | 9.4 | 36,626 | 10.8 | 20.9 |
| • 단자 | 3,533 | 1.2 | 4,375 | 1.3 | 2.1 |
| • 기타 | 64,306 | 21.6 | 76,003 | 22.4 | 28.5 |
| 生命保險 및 年金 | 55,943 | 18.8 | 60,961 | 18.0 | 12.2 |
| 短期債券 | 4,622 | 1.6 | 4,890 | 1.4 | 0.7 |
| 長期債券 | 39,322 | 13.2 | 45,686 | 13.5 | 15.5 |
| • 국공채 | 2,535 | 0.9 | 3,284 | 1.0 | 1.8 |
| • 금융채 | 4,241 | 1.4 | 5,200 | 1.5 | 2.3 |
| • 회사채 | 1,732 | 0.6 | 782 | 0.2 | −2.3 |
| 投資收益證券 | 30,815 | 10.3 | 36,420 | 10.7 | 13.6 |
| 株 式 | 26,484 | 8.9 | 29,292 | 8.6 | 6.8 |
| 合 計 | 298,300 | 100.0 | 339,397 | 100.0 | 100.0 |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상기의 個人金融資産表를 살펴보면 資産別 變動內容은 信託 및 投資收益證券 등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株式, 會社債 및 生命保險/年金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資產別 變動內容

| | |
|---|---|
| 비중증가 | – 신 탁 : 9.4%→10.8% (+1.6%p)<br>– 투자수익증권 : 10.3%→10.7% (+0.4%p)<br>– 기 타 : 21.6%→22.4% (+0.8%p) |
| 비중감소 | – 주 식 : 8.9%→8.6% (–0.3%p)<br>– 회사채 : 0.6%→0.2% (–0.4%p)<br>– 생보/연금 : 18.8%→18.0% (–0.8%p) |

個人金融資產의 構成 變化에서 특이할 만한 현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證券市場으로의 資金移動을 유발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株式과 會社債의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間接投資方式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信託 및 投資收益證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는 개인들이 '93년 실명제 이후 資產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어느 정도 거쳤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다분히 危險回避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金融實名制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으며, 차명계좌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분적인 움직임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金融所得綜合課稅가 실시되는 '96년 직전 또는 직후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부분적인 현상이라 할 지라도 몇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有價證券市場, 특히 株式市場으로의 移動은 예상보다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巨額資金들이 상당히 위험회피적이라는 점에 기초한다. 이는 개인금융자산중 株式 및 會社債의 比重減少 現狀 이외에도, 최근 대규모의 浮動資金이 長期性 投資인 非上場株式 請約에 참여했던 사실은 이들이 收益性 이외에도 安定性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株式關聯商品들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따라서 不動產市場으로의 상대적인 자금이동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不動產에 대해 높은 선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高額金融所得者중 대다수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不動產投資에 대한 投資動機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이밖에 현재 住宅所有上限制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투자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土超稅가 위헌판결이후 완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대지에 대한 투자는 변수가 많은 형편이다.

종합해 보면, 銀行, 保險 등에 가입되어 있는 高額金融所得者 所有資金은 주식관련 상품 및 증권시장으로 이동하는 외에, 不動產 市場으로 이탈하여 金融貯蓄部門의 단기적인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不動產電算網은 이러한 資金離脫에 대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不動產電算網은 모든 부동산의 거래 및 소유 현황을 주민등록 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파악하게 되므로, 부동산투자의 적지않은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賃貸所得 등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자의 경우에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回避效果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浮動資金을 포함한 制度金融圈 離脫資金의 還流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不動產部門으로의 資金流出이 억제되거나, 혹은 이탈자금이 점진적으로 제도금융

권에 환류된다 할 지라도 金融所得綜合課稅는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綜合課稅案의 內容에 따른 影響比較

앞서 살펴본 個人金融資產의 變化推移에 기초한 분석은 資金循環計定에 나타난 個人金融資產의 변화가 金融高所得者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차명계좌 등 금융실명제가 아직 완벽하게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6년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적지않은 시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 制度圈 離脫資金이 점진 환류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金融機關別 影響은 다른 요인보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안 자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金融所得綜合課稅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株式讓渡差益 課稅時期 留保, 장기채권투자시 綜合課稅와 分離課稅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의 요인에 따라 有價證券 市場 및 關聯商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더우기 막대한 규모의 金融資產이 稅金增加를 회피, 이동할 수 있는 유인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효과는 비교적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銀行圈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주택마련저축의 受信高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요인은 있으나, 이들 상품의 주고객층이 一般庶民階層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수신고의 증가는 예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銀行資金은 綜合課稅 實施 및 稅金優待貯蓄의 廢止로 離脫이 예상된다. 다만, 信託의 경우에는 證券市場의 활황과 관련하여 소폭의 증가는 가능할 것이다.

保險社의 경우도 5년이상 유지계약에 대한 非課稅方針이 확정되었지만, 5년미만 貯蓄性商品의 需要 弱化 및 金融高所得者의 資金離脫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9〉 金融綜合課稅에 의한 各 金融圈別 影響

| 금 융 기 관 | 예 상 영 향 |
|---|---|
| 은 행 | - 개인연금저축 및 주택마련저축 수신고 다소 증가<br>- 세금우대저축 폐지에 따른 자금이탈<br>- 증시상황에 따라 신탁은 증가가능 |
| 보 험 | - 개인연금보험의 수신고 증가<br>- 금융고소득자의 자금이탈<br>- 5년미만 계약 수요약화 |
| 비은행저축기관 | - 주식형 투자신탁 수신증가<br>- 1999년까지 세제혜택 유지<br>- 규제가 약한 상호신용금고 등으로의 자금유입 가능성 |
| 증 권 | - 양도차익 과세시기 유보, 장기채권 투자자에 대한 과세방식 선택권 부여 등 자금유입 요인<br>- 은행, 보험자금의 유입 가능성 |

한편, 은행 및 보험의 이탈자금중 일부는 非銀行貯蓄機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즉, 證市活況에 따라 危險回避가 가능하며 고수익률이 예상되는 投資信託과 규제가 비교적 약하고, 1999년까지는 세제혜택이 당분간 유지되도록 결정된 相互信用金庫 등으로의 資金流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生保産業에의 影響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生保産業에 미칠 영향은 앞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金融高所得者의 세금부담 증가회피를 위한 資金離脫, 5년미만 저축성 상품의 稅制惠澤 縮小에 의한 競爭力 弱化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 가. 金融高所得者의 離脫影響

년 4,000만원 이상의 金融高所得者에 대한 생명보험 관련자료는 입수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밀한 영향추정 또한 불가능한 실정이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영향정도의 대략적 가늠만이 가능할 뿐이다.

우선 生命保險性向調査('92)에 의한 生命保險 加入家口의 月間所得 分布를 살펴보면, 약 70%가 월소득 130만원 이하로 조사되고 있다. '92년의 도시가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5만 6,000원이었음을 상기할 때, 대부분이 평균이하의 低所得階層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金融高所得者의 비율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보상품의 성격 자체가 貯蓄機能이 약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金融高所得者의 長期貯蓄性 生保商品 誘引要因도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保險加入家口의 月間所得分布

(단위 : %)

| 구 분 | 100만원 미만 | 100~130만원 | 130만원 이상 |
|---|---|---|---|
| 점유율 | 37.6 | 32.7 | 29.7 |
| 누진율 | 37.6 | 70.3 | 100.0 |

資料) 생명보험협회

실제로 상대적인 고소득자의 가입 가능성이 있는 一時納保險 또는 연납계약의 比重이 금액기준으로 全體 生命個人保險契約의 2.7% (FY'93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貯蓄性保險의 계약건당 수입보험료와 保障性保險의 계약건당 수입보험료간에는 적지않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保有契約金額에 기초한 분석은 生保社의 收入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시납 및 연납계약 전체를 貯蓄性保險으로 간주하고, '94년 9월 현재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금액당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보험계약금)가 보장성보험의 계약금액당 수입보험료의 3.6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일시납 및 연납보험의 수입보험료비중은 9.7% (2.7%×3.6) 까지도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보험료 납입방법별 보유계약비중(개인보험)

| 구분 | 일시납 | 연납 | 월납 | 기타 |
|---|---|---|---|---|
| 점유율 | 1.9% | 0.8% | 96.1% | 1.2% |

資料) 생명보험협회

결국 生保社의 경우 4,000만원 이상의 금융고소득자의 資金離脫 效果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보수적으로 최대 10% 내외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 정도는 신탁, 단자 등 전통적으로 巨額, 高收益 貯蓄商品을 취급해온 金融機關들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稅制惠澤 縮小影響

保險商品은 어떠한 경우에도 保障內容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貯蓄性保險이라 할 지라도 그 보험료에는 危險保險料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또한 이외에도 계약자가 납입하는 保險料에는 消耗性 部分인 事業費가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銀行貯蓄 등 他金融貯蓄商品과 표면적으로는 금리가 같다 할 지라도 만기시에 받는 保險金은 타금융상품의 元利金보다 적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그 격차는 장기일수록 벌어지게 되며, 중도해지시에는 원금이하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特性은 다음과 같은 銀行과 生保의 소득형성비교 그림을 통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他金融貯蓄의 경우에는 저축개시 시점인 A로부터 正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비하여 生命保險의 경우에는 B시점까지는 損失이 발생하며, 그 후에야 正의 所得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발생의 지연 및 복리적용에 따라 他金融貯蓄과 生保商品간의 所得發生 隔差는 시간에 따라 확대되기 마련이다.

〈그림 1〉 은행과 생보의 소득형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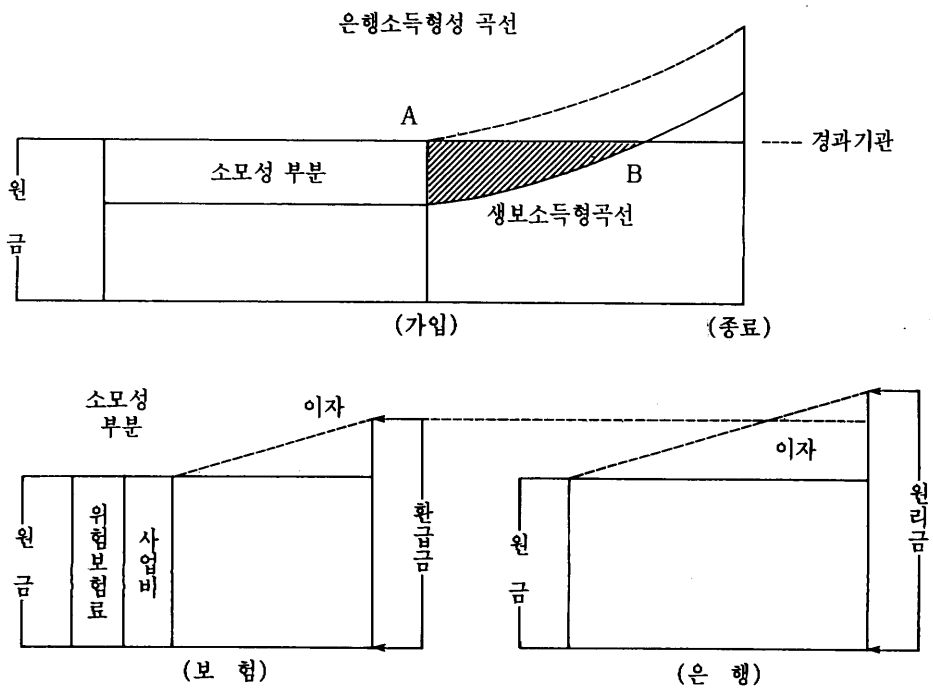


이러한 貯蓄性 生保商品의 內在的 競爭劣位 要因 이외에 金融所得綜合課稅 實行方針에 따라 5년 미만 상품의 稅制惠澤이 폐지된다면, 동 상품들은 他貯蓄商品과의 비교시 수익율 측면에서의 競爭力을 거의 상실하고 말 것이다.

〈표 12〉 銀行과 保險의 收益率 比較(5년형)

(매월 10만원 납입, %)

| 구 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연평균 |
|---|---|---|---|---|---|---|
| 은 행 신 탁 | 107.2 | 114.4 | 122.2 | 130.7 | 140.1 | 8.02 |
| 보 험 노 복 | 80.8 | 94.1 | 103.3 | 111.5 | 120.3 | 4.06 |

資料) 생명보험협회

競爭力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5년이하 貯蓄性保險 契約이 生保社의 個人保險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新契約額 基準으로 FY'93년 현재 약 3.4%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94년 9월 현재 생보사 수입보험료의 46.6%를 차지하고 있는 金融型商品의 적지 않은 부분이 5년이하 유지계약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5년미만 계약에 대한 非課稅 惠澤廢止는 단기적으로 生保社의 收支狀況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종합해 보면, 高額金融所得者의 離脫이 생보산업에의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5년미만 계약에 대한 非課稅惠澤 廢止는 여하히 이들 상품에 대한 需要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商品需要를 非課稅 惠澤이 유지되는 5년이상 계약으로 여하히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金融所得綜合課稅가 生保社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Ⅳ. 맺음말

金融所得 綜合課稅는 金融高所得者의 離脫 등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證券市場을 제외한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生保産業의 경우에는 金融高所得者의 비중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생보사 수입중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5년미만 계약에 대한 非課稅惠澤 縮小는 단기적으로 生保社 收支狀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수요를 여하히 관리, 5년이상 계약으로 흡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非課稅惠澤 對象이 3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축소된 것은 대체적으로 生保社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3~5년 유지하려던 계약이 租稅惠澤의 목적으로 5년이상 유지하려는 동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生保産業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契約維持率의 改善效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保險金 支給要因의 억제를 통한 생보사들의 收支改善 效果도 예상된다. 실제로 '91년 3년미만 계약에 대한 保險差益課稅가 적용된 이후 대폭적인 維持率 改善이 관찰된 바 있다.

〈표 13〉 保險金 支給時까지의 維持期間 比較

(단위 : %)

| 구 분 | 3년미만 | 3~5년 | 5년 이상 | 계 |
|---|---|---|---|---|
| 보험차익비과세시 ('89) | 65.9 | 31.1 | 3.0 | 100.0 |
| 3년미만 차익과세시 ('93) | 33.4 | 46.0 | 20.6 | 100.0 |

註) 보험계약시부터 지금까지 납입한 총보험료 기준

둘째, 모든 生命保險商品에 대해서 入口(保險料納入時) 또는 出口(保險金支給時)에서의 稅制惠澤이 부여되므로 金利自由化時代에 他金融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競爭手段을 지니게 된다. 물론 非課稅 惠澤維持가 현재 모든 他金融機關의 貯蓄商品과의 비교시 絶對的 競爭優位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銀行商品 등과의 旣存 收益力 隔差를 축소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째, 5년이상 貯蓄性保險의 稅制惠澤 維持는 長期保險中心의 市場形成을 촉진하여 생명보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中長期商品 開發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최근의 대형사고 빈발에 따라 保障性商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생보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商品構造 調整努力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네째, 5년이상 유지 貯蓄性商品에 대한 非課稅 惠澤이 확정된 것은 保險의 特殊性을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향후 金融產業改編 進展 등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5년 이상의 維持契約에 대한 非課稅方針이 확정됨에 따라 생보사들에게는 金融所得綜合課稅에 의한 否定的 影響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겠으며, 生保社들은 일선점포장 및 보험설계사 교육강화를 통해 5년미만 계약에 대한 需要管理를 도모하는 동시에 5년이상 非課稅 惠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이들 商品의 販賣擴大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金融所得綜合課稅에서 부여된 稅制惠澤은 단순히 판매증대라는 단기적 시각에서 보다는 長期的인 經營改善의 계기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金融高所得者의 資金離脫 影響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